

제 445 호

1974. 5. 9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 백석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# 시보

차례

차례

## ◎ 조례

|   |   |
|---|---|
| 제 844 호 : 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 중 개정조례             | 3 |
| 제 845 호 :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             | 4 |
| 제 847 호 : 서울특별시 농나무에 대한 농지세 짏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| 6 |

## ◎ 규칙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 1366 호 : 서울특별시 사무위 일규칙 중 개정규칙 | 8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## ◎ 고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제 56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| 22 |
| 제 57 호 : 도시계획아동권원명칭 변경           | 23 |
| 제 58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위가        | 24 |

## ◎ 공고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제 85 호 : 공인선조사항공고 및 개설안내공고          | 25 |
| 제 86 호 :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환지지회 일부변경 공지 공고 | 28 |
| 제 88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실시계획공지 공고      | 29 |

## ◎ 사정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## 조례

국가유지비의 수입을 얻은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에 개정조례를 하여 공포한다.

1974. 5. 3.

서울특별시장

이서울특별시조례 제 844호

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에 제 9호 및 제 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.

9. “공급의장자”라 함은 가스사용자등의 경상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한다.

제 109회

## 요금

(표준용량 7,000 kcal)

| 구<br>분 | 기본기본요금 |       | 초과사용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비<br>고 |
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| 기본량    | 기본요금  | 사용량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료량단가         |        |
| 가수용    | 10㎥    | 650 원 | 기준예정사용량<br>25㎥까지<br>기준예정초과사용량 | 65 원<br>75 원 |        |
|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

10. “공급의장자”라 함은 서울특별시가스공급에 일시중단을 말한다.

제 10조제 2항중 “증자 또는 폐지하고 그 사실을 알지할수있다”는 항지로는 폐지할수 있다. 이에 시장은 그 사실의 알지도 위하여 “알수있다”라고, 동조에 제 3항을 더울과 같이 삽입한다.

③ 사용자등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의장자 또는 정지등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폐지수수료 300원을 신설하여야 한다.

별표를 각각 네거와 같이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39-1-2-4463

시 보

1974.5.9.

별표 2

요금표

(표본번호 24.GODXG#1)

| 용도<br>기사용 | 1개월 기본요금 |      | 초과 사용 요금                 |      | 세<br>율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          | 기본량      | 기본요금 | 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료  |        |
| 가스        | 3㎾       | 690원 | 기준 예정 사용량<br>7㎾까지        | 230원 |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기준 예정 초과 사용량<br>7㎾ ~ 15㎾ | 265원 |        |

별표 2

용구손료표

| 목       | 금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|
| 가스 - 배터 | 개당월 150원 |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수도행정  
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 
포한다.

1974. 5. 4

서울특별시장  
○ 서울특별시조례 제 845 호

수도행정 자문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  
이 개정한다.  
제 3 조에 제 18 호를 다음과 같이 신  
설한다.

18. 안전대책 본과위원회

부 칙

이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세  
율특별시 주택재개발구역내 산불에 대  
한 시설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 
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4. 5. 4

서울특별시장  
○ 서울특별시조례 제 846 호

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구역내 산불  
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  
균일과세에 관한 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에는 도심지와  
불량신장을 개량함으로써 도시미관

|  |   |
|--|---|
| <p>상 취약성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의 보호와 신진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구역내에건축되는 선물에 부과되는 세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          | <p>신들이 준공된 후 최초 입주취득자에게 1회<br/>2. 재산세,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 시설세</p>   |
| <p>제 2 조 (불균일과세대상)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는 주택개량 축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설부장관이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건축되는 선물(부대설비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.</p> | <p>신들이 준공된 후 최초로 계시되는 날기로부터 3년간<br/>제 5조 (사무처리의위임)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은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              |
| <p>1. 취득세<br/>선물 준공후 최초 입주취득자<br/>2. 재산세,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 시설세<br/>불량선물을 최초로 개량 취득한 소유자</p>  | <p>제 6조 (경감신청) 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을 받고자 하는자는 규칙의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매년 날기계시일 20일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|
| <p>제 3 조 (경감율)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전액, 재산세,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 시설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신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  |
| <p>제 4 조 (경감기간) 전조의 경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<br/>1. 취득세</p>  | <p>제 7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 |
| <p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br/>② 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년 12월</p>   |   |

31일까지 시행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조례는 시행이전에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(건설부고시 제470호 73.12.

1) 한구역내의 신축물중 1973년 12월 1일 이후에 신축된 선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신축된 것으로 본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파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

1974. 5. 7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847호

서울특별시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파세

면제에 관한 특별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밤나무 조림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저방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면제대상) 밤나무를 심재한 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중 밤나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면제신청)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 20일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파세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파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세면제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조례 시행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새마을공동 사업에 따른 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4. 5. 7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848호

제 1조(부칙)  
본시행령은 다음 날부터 시행되며  
본시행령과 마을 공동사업에

제 1호(부칙)이 조례는 세율을 사용  
으로 일정으로 주민하고 있는 마  
을 공동(총수) 재산조성과 마을 공동  
사업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 
제 1항에 제 1조 제 1항의 규정  
에 의거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  
을 규정한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면제대상)  
다음 각 호의 1에  
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세·취득세·  
자동차세·면허세·재산세·농지세·  
도로세·전기세 및 소방 공동시설세를  
면제하지 아니한다.

1. 마을 공동(총수) 재산 및 이익  
세금

2. 마을 공동(총수) 재산으로부터 발생  
되는 수입금
3. 마을 공동사업으로 얻어진 소득
4. 마을 공동사업 경영을 위하여 취  
득한 현금

제 3조(사무처장의 위임)  
경조의 규정  
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은 관  
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제 4조(면제신청)  
① 제 2조의 규정에  
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

는 관할 경찰서에 따라 그 4  
월을 충당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 
어 하거나 날짜가 1974년 5월 1일  
경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 
② 경찰의 경찰에 의한 폐쇄연세·신  
장을 받은 때에는 거점없이 조사결정  
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  
여야 한다. 다만 구청장이 경찰의  
구정에 불구하고 제 2조의 규정에  
의한 과세면제 대상을 알 수 있  
는 때에는 지연으로 과세면제할 수  
있다.

제 5조(시행규칙)  
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시행기간)  
이 조례는 바로 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  
일까지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사무처장 공식증·계정권·부  
이에 증명한다.

|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제 445 호          | 1974. 5. 7.  | 1974. 5. 9. |
| 서울특별시 구칙 제 1366호 | 같이 개정한다.<br>서울특별시 각별표를 별지로 같이 한다.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서울특별시 구칙 제 1366호 | 이 구칙은 1974년 5월 10일부터<br>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다음과<br>시행한다. |             |

제 5조

| 실무별<br>보   | 위임 사무별           | 위임구분 | 수임 기관     | 근거 및 적용 법규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화공<br>보 실 | 1. 공연자 등록        | 내부위임 | 구청장 및 읍면장 | 문화법 제 3조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2. 공연자동차활별경신고    | -    | -         | 공연법 제 4조 제 5조           |
|            | 3. 공연자동차증여교부및재교부 | -    | -         | 동법 시행령 제 7조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4. 공연자동차증정명신     | -    | -         | 공연법 제 21조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5. 공연자경영대리인신고    | -    | -         | 공연법 제 11조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6. 공연장의 임접       | -    | -         | 공연법 제 14조 제 2항          |
|            | 7. 각본심사          | -    | -         | 동법 시행령 제 51조            |
|            | 8. 주지(또는 대표일원)   | -    | -         | 불교계 산관의법 제 9조           |
|            | 위임등록             | -    | -         | 동법 시행령 제 5조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9. 불교단체(사찰)등록    | -    | -         | 불교계 산관의법 제 6조           |
|            | 10. 출판사(신문,雑誌)등록 | -    | -         | 동법 시행령 제 4조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11. 신세(印譜, 雜記)등록 | -    | -         | 출판사업·인쇄소등록<br>세관입출통제 8조 |

| 실과별       | 위임사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임구분 | 수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및 적용법령  |
|-----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인사과       | 1. 4급이하공무원의 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부위임 | 구청장및 출장소장                     | 지방공무원법 제 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민과       | 1. 공연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권한위임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연법 제 14조  |
|           | 2. 공연장판람로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부위임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법사행령 제 5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3. 공연장특별요금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연법 제 15조  |
|           | 4. 간호원·조사원면허신고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보건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료법시행규칙 제 1조·제 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판재과       | 1. 용도폐지된 시유건물<br>(불용재산)의 철거<br>및 자재의 처분 | "    | 구청장및 출장<br>소장·보건소<br>장·수도사업소장 | 지방재정법 제 6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2. 잡종재산의 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구청장 및<br>출장소장                 | 지방재정법 제 67조와<br>2항·동법시행령 제 63조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3. 공용재산의 대부(사<br>용허가)                   | "    | 구청장·출장소장·<br>보건소장및<br>수도사업소장  | 지방재정법 제 57조제<br>2항·동법시행령 제<br>62조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4. 시유재산(불용재산·<br>잡종재산)의 매각              | "    | 구청장 및<br>출장소장                 | 지방재정법 제 61조제<br>4항·제 57조와 2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5. 시유재산불하증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민원사무처리규정<br>제 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6. 임대료 및 대각대금<br>수납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재정법시행령 제<br>65조·재무회계규칙<br>제 136조·제 136조<br>의 2 |
| 보건<br>행정과 | 1. 숙박업소에 대한 지<br>도감독                    | 권한위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| 실무별<br>교 건<br>행정과 | 위 임 사 무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임구분 | 수 임기 판 | 근 거 및 적용법 위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1) 숙박업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권한위임 | 보건 소장  | 숙박업법 제 4 조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2) 숙박업허가사항의 변경<br>경허가 및 신고         | "    | "      | 동법시행령 제 2 조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3) 숙박업의 휴지·재개<br>또는 폐지의 신고         | "    | "      | 동법시행령 제 4 조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4) 숙박업허가의 취소<br>및 영업정지             | "    | "      | 숙박업법 제 8 조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5) 숙박업시설의 개수<br>명령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| 숙박업법 제 7 조제 2 항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6) 숙박업시설의 등급결<br>정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| 숙박업법 제 3 조제 2 항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7) 숙박업소의 보고 및<br>검사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| 숙박업법 제 7 조제 1 항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2. 목욕장업소에 대한<br>지도감독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1) 목욕장업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| 공중목욕장법 제 4 조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2) 목욕장업허가사항의<br>변경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| 동법시행령 제 2 조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3) 목욕장업허가의 휴지<br>· 재개 또는 폐지의<br>신고 | "    | "      | 공중목욕장법 제 4 조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4) 목욕장업허가의 취소<br>및 영업정지            | "    | "      | 공중목욕장법 제 8 조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5) 목욕장의 시설등급<br>결정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| 공중목욕장법 제 3 조제<br>2 항 |
|                   | 6) 목욕장업소의 보고검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| 공중목욕장법 제 7 조         |

| 법과별        | 위 임 사 무 명  | 위임구분 | 수 임기 관 | 근거 및 적용법령  |
|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|--|
| 보 전<br>행정과 | 사 및 계수명령<br>3. 이·미용업소에 대한<br>지도감독<br>1) 개설허가 및 이전허가<br>2) 허가사항의 변경 신고<br>3) 폐지 및 휴업 신고<br>4) 업소의 배식처분 및<br>개설허가의 취소<br>5) 업소의 등급사정<br>6) 업소의 점사 및 개<br>수명령<br>7) 이·미용사의 건강진<br>단명령과 업무정지명령<br>8) 이·미용사의 면허증소<br>9) 영업소이의의 장소에<br>서의 영업행위의 인정 | 전한위임 | 보전소장   | 이·미용법 제 8조제 1항<br>동법시 행규칙 제 20조와 21<br>동법시 행규칙 제 19조<br>이·미용법 제 14조<br><br>이·미용법 제 9조제 2항<br>이·미용법 제 12조 |
| 보 전<br>예방과 | 1. 마약법 제 7조제 4호내<br>지 제 6호의 마약취급<br>자면허<br>2. 마약법 제 7조제 4호내지<br>제 6호의 마약취급자면허<br>등록사항변경 신고<br>3. 마약취급자면허<br>4. 마약구입서(판매서)<br>의 교부<br>5. 마약의 양도증인   | 내부위임 | -      | 이·미용법 제 6조·제<br>7조<br>이·미용법 제 7조<br>이·미용법 제 10조<br>서·동법시 행령 제 2조<br>마약법 제 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39-12

제 445 호

시  
보

1974년 6월 9일

| 설명                    | 위임사무명   | 위임구분 | 수탁기관           | 국가 및 지방법률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보<br>전<br>예<br>방<br>과 | 6. 제 1종·제 2종 및 제 3<br>증진영행에 대한 예방법률<br>7. 예방법률증정서의 교부<br>8. 제 1증진법령예방시설<br>의 설치 및 소유·기타<br>필요한 조치<br>9. 제 1증진법령환자가 육<br>에 대한 방역조치<br>10. 제 1증진법령의 예방조치<br>11. 제 1증진법령에 대한<br>강제처분<br>12. 기생충예방을 위한<br>수거 및 검사 | 권한위임 | 보건소장           | 전체 예방법제 10조<br>제 11조<br>전체 예방법제 20조<br>전체 예방법제 23조<br>제 26조<br><br>전체 예방법제 37조<br><br>동법제 39조·제 43조<br>동법제 42조<br><br>기생충질환예방법제 6<br>조 |
| 아<br>동<br>복<br>리<br>과 | 1. 아동복지시설에 대한<br>인가<br>1) 설치인가<br>2) 폐지 또는 경지신체<br>3) 명칭·주소지·대표자<br>또는 사업목적변경인가<br>2.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를<br>인 아동의 후견인 지정<br>3. 학력 및 육아시설의<br>아동양육에 관한 이용<br>의 보조   | 내부위임 | 구 청장 및<br>출장소장 | 아동복지법제 17조<br><br>동법 시행령 제 11조<br><br>아동복지법제 13조 보<br>호시설에 있는 고아의<br>후견자로써 관할법률에 23<br>아동복지법제 2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권한위임 |                |  |

| 실무별  | 위임사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임구분 | 수임기관           | 근거 및 적용법령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아동과  | 4.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일<br>가취소와 사업의 정지처분 | 전한위임 | 구 청장 및<br>출장소장 | 동법 제 26조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5. 보호호아동에 대한 일<br>소허가 및 수송       | "    | 아 동<br>보호소장    | 동법 제 9조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6. 일소아동의 퇴·소허가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| 동법 제 11조                    |
| 부녀과  | 1. 결혼예식장영업허가 및 취소                | "    | 구 청장 및<br>출장소장 |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<br>제5조·제7조·제11조 |
|      | 2. 장례식장영업허가 및 취소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3. 장례사업영업허가 및 취소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회과  | 4. 결혼상담소허가 및 취소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1. 사회복지법인의 업무 및<br>재산상황점사 및 감독   | "    | "              | 사회복지사업법<br>제 16조제 1항        |
| 청소2과 | 1. 애상폐기물 정화조<br>설치·시공            | "    | 보건소장           | 오물청소법 제 12조<br>동방시방금칙 제 15조 |
|      | 2. 애상폐기물 정화조의<br>설치·준공검사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환경과  | 1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                  | 내부위임 | 구 청장 및<br>출장소장 | 공해 방지법 제 4조                 |
|      | 2. 배출시설설치허가사항<br>변경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정과  | 1. 물가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한위임 | "              |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<br>제 5조·제 10조   |
|      | 2. 협정요금위반단속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3. 가격표시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| 내부위임 | "              | 동방시행정제 6조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4. 계량기정기검사(특수<br>계량기 제외)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| 제량법 제 30조                   |

| 실무별 | 위업사무명                      | 위업구분 | 수임기한          | 근거 및 적용법규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|
| 공업과 | 1. 중소기업체증명                 | 내부위임 | 구청장 및<br>출장소장 |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5조  |
|     | 2. 원자재소요량증명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|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조  |
|     | 3. 전기기술자변경이동신고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| 전기공사업법 제 13조<br>제 1항·동일시행령 제<br>8조제 2항                   |
|     | 4. 공장등록                    | 권한위임 | "             | 공장등록시행규칙 제 2조  |
|     | 5. 공장등록변경신고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| 공장등록시행규칙 제 6조  |
|     | 6. 수출공산품생산기업체<br>신고        | 내부위임 | "             |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8조<br>수출(군납포함)생산기<br>업체신고규정(상공부고<br>시제 3014호) |
|     | 7. 품질표시상품의 관리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|  |
|     | 1) 품질표시명령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| 품질관리법시행령 제 18<br>조제 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2) 품질표시명령위반상품<br>판매 및 진열금지 | "    | "             | 통법시행령 제 18조<br>제 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3) 품질검사불합격품의<br>파기 또는 수거명령 | "    | "             | 품질관리법시행령<br>제 18조제 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4) 품질표시상품의 판매<br>및 진열금지 해제 | "    | "             | 통법시행령 제 18조<br>제 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5) 품질표시상품의 검사<br>지정상품조사    | "    | "             | 통법시행령 제 18조<br>제 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8. 영세기업체정자금 읍자<br>추진       | 권한위임 | "             | 중소기업체재정자금운<br>영요강  |
| 연료과 | 1. 고압가스제 3종제조업<br>허가       | 내부위임 | "             | 고압가스안전관리법<br>제 3조  |

| 실무별 | 위업사부명                       | 위업구분 | 수입기관         | 근거 및 적용법령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료과 | 2.광업사업안인가                   | 내부위업 | 구청장및<br>출장소장 | 민원사무처리규정<br>제 2 조             |
|     | 3.광업착수유예인가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광업법 제 42 조제 2항<br>동법시행령 제 3 조 |
|     | 4.광업계속신고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민원사무처리규정<br>제 2 조             |
|     | 5.광업체인가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6.광업착수신고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7.광업사업안면경인가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8.광업사무소면경신고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9.광업출원인 명화변경<br>신고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0.광업출원인 주소변경<br>신고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1.광업출원인 명의승계<br>신고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2.공동광업출원인 대표<br>자변경신고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3.광업대리인선·해임신고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4.생산설보제출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5.고압가스제조업제 4종<br>(후리온가스)허가 | "    | 도시가스<br>사업소장 | 고압가스안전관리법<br>제 3 조            |
|     | 16.도시가스시 공업자지정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| 가스공급조례 제 5 조                  |
|     | 17.공급지역외 공급판 및<br>가정관공사     | "   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8.고압가스용기검사                 | 권한위임 | 연료시험소장       | 고압가스안전관리법<br>제 13 조           |

39-16 채 445호

시 보

1974.5.9

| 실파별 | 위 입 사 무 명                     | 위입구분  | 수 입 기관        | 근거 및 적용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농경과 | 1. 축약수의사와 일련                  | 내부위입  | 구청장및<br>출장소장  | 수의사법제 1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2. 기술목 축업등록                   | "     | "             | 초지법제 2조제 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3. 동물약물취급신고                   | "     | "             | 동법시 행령 제 1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4. 어선소유 신고                    | "     | "             | 동물약물취급규칙 제 14조<br>어선신고요강제 5조내<br>지제 9조 |
|     | 5. 농경지개 간지조사                  | "     | "             | 농경지조성법제 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6. 농경지개간허가권 양도<br>허가승인        | "     | "             | 동법제 1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7. 농경지개 간허가권 상속<br>신고         | "     | "             |  |
|     | 8. 종자생산포장의 지정                 | 권 한위임 |               | 주요농작물종자법제 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9. 부정 농약단속                    | "     | "             | 농약관리법제 4조·제 14조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0. 축산물의 검사                   | "     | 가축위생<br>시험 소장 | 축산물가공처리법<br>제 17조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1. 가축전염병 방지에 관<br>한 권한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|
|     | 1) 가축에 대한 검사·주사<br>약육 및 투약 명령 | 권 한위임 | 구청장및<br>출장소장  | 가축전염병예방법<br>제 5조제 1항                   |
|     | 2) 검사·주사·약육 및 투<br>약 실시증명서 교부 | "     | "             | 동법제 5조제 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3) 가축에 대한 소득 및<br>청소지시        | "     | "             | 동법제 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4) 감염가축의 격리조치                 | "     | "             | 동법제 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5) 감염가축의도살처 분명령               | "     | "             | 동법제 1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제 445 호 시 보 1974.5.9 39-17

| 실험과 | 위험 사고 명   | 위험구분               | 수입기준                  | 근거 및 적용법률  |
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농경과 | 12. 중축검사에 관한 관한<br>1) 중축검사설치<br>2) 중축표시 및 중축증<br>명서교부<br>3) 중축증명서의 유효<br>기간 연장<br>4) 휴보중축지정 및 등증<br>명서의 교부<br>5) 중축검사원의 일정<br>또는 위치<br>6) 중부의 제한<br>7) 보호중축의 지정<br>8) 모축의 거세명령<br>9) 부화업자등록<br>10) 충남의 검사 | 전단위입<br>수입<br>내부위입 | 국<br>경<br>장<br>소<br>장 | 축산법제 3조<br>동법제 4조<br>동법제 5조제 1항<br>축산법제 9조<br>동법시행규칙제 4조<br>축산법제 6조<br>동법제 8조<br>동법제 10조<br>동법제 12조<br>동법시행규칙제 26조<br>양축관리법제 22조<br>제 1항<br>동법제 15조와 3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양경과 | 1. 양육폐肥업의 영업경<br>지 처분<br>2. 영업시설의 양도승인<br>3. 영업시설의 임대승인<br>4. 영업시설의 변경승인<br>5. 영업폐지신고의 접수<br>6. 양축유통단속  | 내부위입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농수산부고시제 2455호<br>제 2463호<br>사랑사업법제 14조<br>수입법제 24조 임산물<br>단속에 관한 법률제 2조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| 녹지과 | 1. 토석재취허가<br>2. 임야개간허가 및 준<br>공경사(3,000평이내)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■  |
|     | ■   |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|  |

39-18 제 445 호 시 보 1974.5.9.

| 신 과별            | 위 입 사 무 명   | 위 입 구 분      | 수 입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| 근 거 및 적용 법 규 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녹지과             | 3. 사방지 내에 서의 모든 행위 제한<br>4. 그린벨트구역내의 각종 행위 단속<br>5. 해충의 구제 및 예방   | 내부위임<br>권한위임 | 구 청 장 및 광<br>수               | 사랑사랑법 제 14조<br>도시계획법 제 4조<br>제 1항<br>산림법 제 51조          |
| 공원과             | 1. 공원 점용( 사용 ) 허가<br>2. 공원내 상시 영리 행위 사용 ( 사진 ) 허가<br>3. 이식 불능가로 수입체증인<br>4. 고사가로 수입체증인  | 내부위임         | 〃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원법 제 16조, 공원조례 제 2조<br>등 조례 제 2조, 제 4조<br>가로수보상규칙 제 2조 |
| 도 시<br>재 계<br>과 | 1. 사도개설허가   | 〃            | 〃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도법 제 4조  |
| 건축과             | 1. 다음에 기기 하는 건축권한위임<br>법상 권한( 연면적 이 1,000평방미터를 넘는<br>건축물 5층이상인 건축<br>물과 미관지구내 및 특<br>정 가구정비지구의 건축물<br>에 관한 권한은 제외<br>한다)<br>1) 건축법 제 2조 제 1호<br>나무, 제 5조, 제 6조<br>제 3항, 제 7조, 제 7조<br>의 2, 제 7조의 3 제 2항<br>제 8조, 제 9조의 2 제 2항<br>제 42조 제 1항 제 1호,<br>제 4호 및 등 조제 4 항, | 〃            | 건축법 제 4조 제 2항<br>등법 시행령 제 5조 |   |

제 445호 시 보 1974.5.9 39-19

| 실무별   | 위 입 사 무 형   | 위임구분 | 수 입 기 판         | 근 계 및 적용 법 규   |
|-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건축과   | 제 43 조와 제 4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<br>관한와 전부<br><br>2. 연면적 1,000평 이상 및<br>5층이상인 건축물에 대<br>한 건축허가 ( 미 편지구<br>내 특정 가구정비자구는<br>제외 한다.) | 권한위임 | 구 청 장 및<br>출장소장 |  |
| 주 행정과 | 1. 시영 주택의 유지 관리<br><br>2. 시영 주택을 양재 약체전   | 내부위임 | "               | 전국법제 5조  |
| 운수2과  | 1. 창고업의 허가<br><br>2. 자동차운송업신업허가<br>( 물동량소개, 화물, 부<br>역방, 이삿짐 기타)  | "    | "               | 시 영주 액면리조제제 17조<br>등조제 7조  |
| 운수3과  | 1. 3급 자동차정비사업의<br>지도감독<br><br>1) 3급 자동차정비사업의<br>경영허가<br>2) 3급 자동차정비사업의<br>변경허가<br>3) 3급 자동차정비사업의<br>양도허가                      | 권한위임 | "               | 창고업법제 3조, 등법<br>시 영법제 3조<br><br>자동차운수사업법제<br>49조, 등법시 행규칙<br>제 31조, 제 3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행정과   | 1. 중기검사   | 내부위임 | 중 기 관리<br>사업 소장 | 도로운송차량법제 44<br>조제 2항<br>등법제 44 조제 6항<br><br>등법제 44 조제 6항<br><br>중기관리법제 12조,<br>중기의 관리 및 등록에<br>관한규제 2조 |

39-20

제 445 호

시

보

1974.5.9

| 실무별    | 위임사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임구분 | 수임기관             | 근거 및 적용법규         |
|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시설 관리과 | 1. 도로상의 지정물장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부위임 | 구 청장 및<br>읍장, 소장 | 도로법 제 48 조        |
|        | 2. 아휘 및 선전탑 설치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| 도로점용로장수조례 제 3 조   |
|        | 3. 도로, 하천공유수면점<br>용로 감면 신청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| 공유수면 관리법 제 7 조    |
|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도로점용로장수조례 제 5 조   |
|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하천점용로, 장수조례 제 2 조 |
|        | 4. 비 관리 청의 도로공사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| 도로법 제 40 조        |
|        | 5. 비 관리 청의 하천공사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| 하천법 제 23 조        |
|        | 6. 도로보수 및 부속물<br>의 설치유지관리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| 동법 제 24 조         |
|        | 7. 하천점용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| 하천법 제 25 조        |
|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동법 시행령 제 18 조     |
|        | 8. 구거점용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| 공유수면 관리법 제 4 조    |
|        | 9. 도로점용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| 도로법 제 40 조        |
|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동법 시행령 제 24 조     |
|        | 10. 공유수면점용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| 공유수면 관리법 제 4 조    |
|        | 11. 하천공작물신축허가<br>(지방하천, 준용하천)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| 하천법 제 26 조        |
|        | 12. 공유수면매립면허<br>(지방하천, 준용하천)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| 공유수면 매립법 제 4 조    |
|        | 13. 하천유지허가 (지방하<br>천, 준용하천)         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| 동법 시행령 제 3 조      |
|        | 14.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<br>양도허가 (지방하천, 준<br>용하천) | "    | "                | 하천법 제 23 조        |
|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공유수면 매립법 제 15 조   |
|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동법 시행령 제 29 조     |

| 신과별   | 위업사구명   | 위임구분         | 수입기준         | 근거 및 적용법률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45회 | 15. 공유주권에 향공서 허용 및 부여일<br>기장연기선가(자단화선)<br>출증하지. | 국적증명<br>수입증명 | 국적증명<br>수입증명 | 동법 제 10조, 동법시<br>령령 제 16조 |
|       | 16. 유토도로 관리 천연사<br>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유토도로 관리 규칙 제 6<br>조       |
|       | 17. 유토도로 통행료 징수<br>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유토도로 통행료 징수<br>조례 제 3조    |
| 포장과   | 1. 보도글 박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도로법 제 40조                 |
|       | 2. 도로글 박승인(지침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. 보도 및 콘크리트 포장관련 위임<br>도로유지 관리와 글 박승인<br>및 복구.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수과   | 1.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하수도법 제 24조                |
|       | 2. 가설하수도에 대한<br>보수 및 유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동법 제 7조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. 폐기·유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동법 제 10조                  |
| 임무과   | 1. 상수도 시공업 회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수도사업소장       | 급수조례 제 12조                |
|       | 2. 노후관 교체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. 노후관 통합 및 개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| •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서    |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39-22 제 445호

시

1974.5.9.

## 고 시

## 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 
일부변경 및 지적승인

1.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 
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및 지적  
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

제13조의 규정과 전설부 고시 제  
123호(73.4.4)에 따라 이를  
고시한다.

2.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 
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(출장소)  
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 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4. 5.

서울특별시장

1. 토선조사 별첨

2. 관제조사 별첨

별첨: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

## 로 선 조 서

| 구분 | 동급 | 읍 | 면호 | 쪽월 | 연장  | 기 절        | 종 절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|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정 | 소로 | 3 |    | 6  | 109 | 제기동 341    | 제기동 341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변경 | 〃  | 3 |    | 6  | 114 | 〃          | 〃          | 기존도로 활용<br>일부위치변경                |
| 기정 | 〃  | 3 |    | 6  | 155 | 화양동 151-26 | 화양동 151-26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변경 | 〃  | 3 |    | 6  | 156 | 〃          | 〃          | 동일소유토지내에서<br>토지이용증대로기 위치<br>일부변경 |
| 기정 | 〃  | 1 |    | 10 | 230 | 창동 524     | 창동 547-24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변경 | 〃  | 1 |    | 10 | 230 | 〃          | 〃          | 제당신변경에 따라<br>제당기획선조정             |
| 기정 | 〃  | 3 |    | 6  | 140 | 창동 547-1   | 〃 537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변경 | 〃  | 3 |    | 6  | 150 | 〃 "        | 〃 "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정 | 〃  | 3 |    | 6  | 160 | 〃 525-1    | 〃 531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변경 | 〃  | 3 |    | 6  | 170 | 〃 "        | 〃 "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분 | 동호 | 유<br>형 | 번호 | 면적 | 연장  | 기<br>점      | 종<br>점      | 비<br>고   |
|----|----|----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기정 | 소로 | 3      |    | 6  | 170 | 창동 525-1    | 창동 527      |  |
| 변경 | "  | 3      |    | 6  | 180 | "           | "           | 제 12조 및 전설부 고시 제 123호<br>( 73.4.4 )에 의하여 이를 변경 |
| 기정 | "  | 2      |    | 8  | 340 | 신림동 668-9   | 신림동 668-9   | 제 3자   |
| 기정 | "  | 2      |    | 8  | 110 | 영등포동 527-16 | 영등포동 527-48 |  |
| 변경 | "  | 3      |    | 6  | 150 | " 525-27    | "           | 제 12조 및 전설부 고시 제 123호<br>( 73.4.4 )에 의하여 이를 변경 |
| 기정 | "  | 1      |    | 10 | 140 | 온수동 23-1    | 온수동 21-14   |  |
| 변경 | "  | 2      |    | 8  | 140 | "           | " 21        |  |
| 기정 | "  | 3      |    | 6  | 266 | 광장동 394-6   | 광장동 355-4   |  |
| 변경 | "  | 3      |    | 6  | 270 | "           | "           | 기존도로 활용<br>일부 위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정 | "  | 3      |    | 6  | 140 | 능동 230-3    | 능동 427      |  |
| 변경 | "  | 4      |    | 4  | 120 | "           | " 431-3     | 지구의 일부 폭탄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정 | "  | 3      |    | 6  | 190 | 대조동 68-213  | 대조동 68-5    |  |
| 변경 | "  | 3      |    | 6  | 190 | "           | " 68-7      | 제 12조 및 전설부 고시 제 123호<br>( 73.4.4 )에 의하여 이를 변경 |

## 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 호

도시계획아동공원명칭변경

- 당시 도시계획 아동공원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 
가. 도시계획 아동공원명칭·변경

제 12조 및 전설부 고시 제 123호  
( 73.4.4 )에 의하여 이를 변경  
고시한다.

1974. 5. 7.  
서울특별시장

| 공원종류 | 공원명         | 위<br>치              | 면적    | 비<br>고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아동공원 | 보문아동<br>공·원 | 동대문구 보문동7가<br>108번지 | 2,013 | 신설제 3아동공원을 보문아<br>동공원으로 공원명칭변경 |

## 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58 호

##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허가

-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2 호 (73. 12. 10.)로 학교용지로 지정 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(73. 4. 4.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- 본체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4. 5. 7.

서 울 특 별 시 장

## 1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목지적 소유권이의 권리명세

| 소재지             | 지목 | 지적     | 소유권이의 권리명세 |
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시내 관악구사당동 195-1 | 전  | 150평   |            |
| " 195-2         | 전  | 202    | 서울특별시 가압류  |
| " 198           | 답  | 702    |            |
| " 199-1         | 전  | 1,247  |            |
| " 199-2         | 답  | 405    |            |
| " 201           | 답  | 327    |            |
| " 202-1         | 답  | 680    |            |
| 제               |    | 3,713평 |            |

제 445 호 시 보 1974.5.9. 39-25

## 2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 주소설명

| 소재지   | 토지 소유자와 주소  | 성명   | 관계인과 주소설명 |
|---|---|--|-----------|
| 서대문구 사당동 195-1<br>195-2<br>198<br>199-1<br>201<br>202-1 | 성북구정 능동 266-318<br>266-38<br>용산구한강로 2가 391<br>서대문구정 창동 41-31<br>중구도동 2가 92-5<br>" | 이 중 권<br>박 호 순<br>김 학 국<br>우 세 화<br>나 순 판<br>김 기 봉 | 서울특별시가압류  |

## 공 고

## 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85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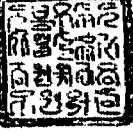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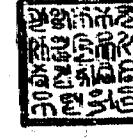
공인신조사 할 공고  
및 개설공고 안내  
서울특별시 산하 관악구 및 도봉구  
수도사업소 중점에 따라 관악구 및  
도봉구의 수도사업소장인, 분임경리관

분임지 출원인, 분임수입원인, 수임금임  
출납원인, 분임물품출납원인, 국민체육  
조합장인,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인을  
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3조 규정에  
의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임명하였  
기 공고함.

1974. 5. 1.

서울특별시장

| 순위 | 인명     | 도봉구수도사업소  | 월곡구수도사업소  |
|----|--------|---|---|
| 1  | 사업소장인  |    |    |
| 2  | 분임경리관인 |    |    |
| 3  | 분임처출원인 |   |   |
| 4  | 분임수입원인 |  |  |

| 순위 | 인명             | 도봉구수도사업소  | 광악구수도사업소  |
|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
| 5  | 수입금분임출납원인      |    |    |
| 6  | 분임금분임출납원인      |    |    |
| 7  | 국민지속조합장인       |   |   |
| 8  | 유가증권<br>제금공우원인 |  |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<p>1. 도봉구 관리자 및 관리부<br/>수도사업소 개설 안내 -</p> <p>도봉구 및 관악구 수도사업소를<br/>다음과 같이 개설하고 74. 5. 1부<br/>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음과 아울<br/>러 성북구 수도사업소를 이전하게 되<br/>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지장이<br/>있으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계수 많은<br/>지도 부탁드립니다.</p>                     | <p>지<br/>회<br/>2<br/>호</p> |          |
|   | 소장회 관리부                    | 93-78648 |
|   | 과정 1, 2개                   | 94-1802  |
|   | 공무 1, 2개                   | 93-81192 |
|   | 민원신고센터                     | 93-3000  |
| <p>다. 성북구 수도사업소(이전장소)</p> <p>(1) 소재지 : 성북구 동소문동 3가<br/>11, 12, 13번지</p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<p>(2) 전화 번호</p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| 소장실                        | 94-5431  |
|   | 관리부                        | 94-5432  |
|   | 과정 1, 2개                   | 94-5433  |
|   | 공무 1, 2개                   | 94-5434  |
|   | 민원신고센터                     | 94-5435  |
| <hr/> <p>○ 서울특별시 공고지 86호</p> <p>도지사 회경직 사업자 구<br/>관지지회 일부변경공찰공고</p> <p>1. 서울특별시 신길, 신월우가, 시흥<br/>군 도지사 토지부회경직사업자구내 일<br/>부로지역 대한 관지지회를 변경하<br/>고자 토지부회경직사업자 제 47 호.<br/>제 65 호 및 제 33 호의 규정에 의하여<br/>공고신고하고 14일간 공람 공고한다.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2. 소재지 : 75-7931~9 (고환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3. 도봉구 수도사업소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(1) 소재지 : 도봉구 미아동 58543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|   |   |
|---|---|
| <p>2. 환경계획변경 판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>3.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될 것이나,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4. 5. 2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 울 특 별 시 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 란 개 요</p> <p>1. 사업명 : 신림, 신림주가, 시흥, 김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</p> <p>2. 변경지역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, 봉천동, 사당동, 신대방동, 일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둑산동, 시흥동, 신도림동, 영창동, 등촌동, 내발산동 일부지역</p> <p>3. 변경필지수 : 85필지</p> <p>4. 변경면적 및 도면 :</p> <p>    · 면적(생략) :</p> | <p>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88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(도로)<br/>설시계획 공란 공고</p> <p>1. 선설부고시 제 2439 호 ( 66.5 . 21 )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19 호 ( 74.2.26 )로 시설 결정권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제 25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일로부터의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란에 공한다. 판계도서는 당시 전선행경과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4. 5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 울 특 별 시 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 란 개 요</p> <p>· 가. 사업시행지위치 : 성동구 군자동, 송정동, 명곡동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동부간선도로공사 ( 상봉동~화양동간 )</p> <p>다. 사업규모 :</p> <p>    · 도로폭 30미터, 연장 5,250미</p> |
|---|---|

39-30 제 445호

시 보

1974. 5. 9.

터. 고단 (면적 26미터, 면장 9.6  
미터)  
라. 사례자 :  
서울특별시장  
마. 학수 및 문공예정

74. 5. . ~ 74. 12. 31.  
사. 수용 또는 사용 할로전 : 복첩 방에  
야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 
토지수용법 제수조례의 항의 관계  
인 주소 성명

## 토지조사서

| 순위 | 소재지        | 분할전표지 |    |    | 분할후표지<br>(수용대장) |    |     | 소유자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관계인 |
|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   |            | 지번    | 지목 | 지적 | 지번              | 지목 | 지적  | 주 소               | 성명         |     |
| 1  | 성동구<br>군자동 |       |    |    | 135~93          | 답  | 76  | 중무로 2가 82         | 서울여자<br>대학 |     |
| 2 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30~66          | 대  | 50  | 보문동 3가 168        | 송찬조        |     |
| 3 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27~14          | 전  | 617 | 신교동 6-20          | 권갑조        |     |
| 4 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26~5           | 대  | 142 | 신교동 6-2           | :          |     |
| 5 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25~268         | "  | 36  | 월동 2가 134-9       | 송치배        |     |
| 6 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25~267         | "  | 258 | 신당동 251-82        | 홍병희        |     |
| 7 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25~271         | 전  | 115 | 군자동 123           | 진중근        |     |
| 8  | 성동구<br>송정동 |       |    |    | 1~12            | 대  | 23  | 전농동 21-7          | 윤경숙        |     |
| 9 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~113           | 전  | 155 | 군자동 123           | 진중근        |     |
| 10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~114           | "  | 11  | 성수동 2가<br>656-282 | 김영준        |     |
| 11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~115           | "  | 130 | 군자동 124           | 김소산        |     |
| 12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~116           | 대  | 54  | 삼천동 60-21         | 이설화        |     |
| 13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~117           | "  | 9   | 이왕직<br>장판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| 14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~118           | 전  | 4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| 15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1~119           |    | 2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| 16 | "          |       |    |    | 2~2             |    | 136 |                   | 신덕용        |     |

| 순위 | 소재지 | 분할전 표시 |    |    | 분할후 표시<br>(수용대장) |    |     | 소유자         |               | 판매일 |
|----|-----|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   |     | 지번     | 지목 | 지적 | 지번               | 지목 | 지적  | 주 소         | 상 명           |     |
| 17 | 송정동 |        |    |    | 4~ 3             |    | 45  | 송정동 4       | 한수동           |     |
| 18 | "   |        |    |    | 5~ 2             |    | 32  | 송정동 5       | 한경모           |     |
| 19 | "   |        |    |    | 72~ 184          |    | 22  | 국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 20 | "   |        |    |    | 73~ 99           | 전  | 13  | 송정동 72      | 김천식           |     |
| 21 | "   |        |    |    | 73~ 970          | "  | 33  | 필동 74       | 정경남           |     |
| 22 | "   |        |    |    | 73~ 971          | "  | 55  | 송정동 72      | 김천식           |     |
| 23 | "   |        |    |    | 7~ 2             | 마  | 22  | 송정동 7       | 전철수           |     |
| 24 | "   |        |    |    | 8~ 2             | "  | 65  | 송정동 8       | 이준봉           |     |
| 25 | "   |        |    |    | 9~ 2             | "  | 2   | 송정동 8       | "             |     |
| 26 | "   |        |    |    | 10~ 10           | "  | 4   | 송정동 10-3    | 박영애           |     |
| 27 | "   |        |    |    | 10~ 11           | "  | 48  | 송정동 10-3    | "             |     |
| 28 | "   |        |    |    | 10~ 12           | "  | 24  | 도선동 69      | 이영자           |     |
| 29 | "   |        |    |    | 12~ 2            | "  | 80  | "           | "             |     |
| 30 | "   |        |    |    | 13~ 2            | "  | 2   | 동부이천동 304-7 | 권영애           |     |
| 31 | "   |        |    |    | 13~ 6            | "  | "   | 미아동 619-7   | 조천웅           |     |
| 32 | "   |        |    |    | 18~ 2            | "  | 254 | 필동 76       | 손주식           |     |
| 33 | "   |        |    |    | 20~ 4            | "  | 131 | 송정동 2       | 신덕용           |     |
| 34 | "   |        |    |    | 20~ 5            | "  | 255 | 군자동 100     | 방학진           |     |
| 35 | "   |        |    |    | 21~ 83           | "  | 9   | 군자동 124     | 김소산           |     |
| 36 | "   |        |    |    | 28~ 6            | "  | 50  | 율지로 2가 148  | 장남설           |     |
| 37 | "   |        |    |    | 28~ 8            | "  | 7   | 남산동 16      | 한영덕           |     |
| 38 | "   |        |    |    | 70~ 55           | "  | 8   | 하왕십리 106    | 동양경업<br>총업 Co |     |
| 39 | "   |        |    |    | 70~ 56           | "  | 8   | "           | "             |     |
| 40 | "   |        |    |    | 70~ 57           | "  | 125 | 하왕십리 106    | "             |     |

39-32 제445호

시 보

1974.5.9

| 순위 | 소재지 | 분할건표시 |    |    | 분할후 표시<br>(수용 대장) |    |     | 소유자        |               | 판지 |
|----|-----|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
|    |     | 지번    | 지목 | 지적 | 지번                | 지목 | 지적  | 주 소        | 성 명           |    |
| 41 | 송정동 |       |    |    | 70~58             | 대  | 193 | 하왕십리 106   | 동양정밀<br>공업OO. |    |
| 42 | "   |       |    |    | 70~60             | "  | 182 | 송정동 70-20  | 김기운           |    |
| 43 | "   |       |    |    | 70~61             | "  | 334 | 하왕십리 106   | 동양정밀<br>공업OO. |    |
| 44 | "   |       |    |    | 70~63             | "  | 200 | "          | "             |    |
| 45 | "   |       |    |    | 70~64             | "  | 22  | "          | "             |    |
| 46 | "   |       |    |    | 70~65             | 답  | 347 | 상왕십리 436-5 | 문성인           |    |
| 47 | "   |       |    |    | 68~80             | "  | 228 | 화양동 94     | 문화운           |    |
| 48 | "   |       |    |    | 68~82             | "  | 126 | "          | "             |    |
| 49 | "   |       |    |    | 68~83             | 전  | 88  | 상왕십리 436-5 | 문성인           |    |
| 50 | "   |       |    |    | 73~972            | "  | 28  | 송정동 39-2   | 시태원           |    |
| 51 | "   |       |    |    | 73~973            | 답  | 154 | 국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
| 52 | "   |       |    |    | 73~974            | 대  | 3   | 홍익동 262-1  | 민총현           |    |
| 53 | "   |       |    |    | 73~975            | "  | 4   | 화양동 168-6  | 모상일안          |    |
| 54 | "   |       |    |    | 73~976            | "  | 0.7 | 홍익동 262-1  | 민총현           |    |
| 55 | "   |       |    |    | 73~977            | "  | 4   | 송정동 73-22  | 이억희           |    |
| 56 | "   |       |    |    | 73~978            | "  | 1   | 송정동 73-511 | 황홍식           |    |
| 57 | "   |       |    |    | 1~3               | 도  | 3   | 이왕직장판      |               |    |
| 58 | "   |       |    |    | 1~4               | "  | 18  | 송정동 1      | 손명순           |    |
| 59 | "   |       |    |    | 1~5               | "  | 10  | 이왕직장판      |               |    |
| 60 | "   |       |    |    | 1~5               | "  | 140 | 아현동 622-15 | 김재홍           |    |
| 61 | "   |       |    |    | 1~19              | "  | 64  | "          | "             |    |
| 62 | "   |       |    |    | 1~20              | "  | 20  | 이왕직장판      |               |    |
| 63 | "   |       |    |    | 1~21              | "  | 6   | 송정동 38     | 주복녀           |    |
| 64 | "   |       |    |    | 1~22              | "  | 1   | 이왕직장판      |               |    |
| 65 | "   |       |    |    | 1~23              | "  | 14  | "          | "             |    |
| 66 | "   |       |    |    | 1~39              | "  | 7   | "          | "             |    |

| 순위 | 소재지 | 부할신도시 |    |         | 분할후 도시<br>(수용 예정) |       |             | 소 읍   |    |  | 면적 |
|----|-----|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|--|----|
|    |     | 읍면    | 지구 | 지번      | 읍면                | 지구    | 지번          | 주 소   | 면적 |  |    |
| 67 | 충정동 |       |    | 1~50    | 진                 | 1     |             | 이동국장현 |    |  |    |
| 68 | "   |       |    | 1~51    | 도                 | 1     |             | "     |    |  |    |
| 69 | "   |       |    | 1~70    | "                 | 4     |             | "     |    |  |    |
| 70 | "   |       |    | 1~96    | "                 | 44    | 충주군 3가 24-6 | 충녕면   |    |  |    |
| 71 | "   |       |    | 3       | "                 | 155   | 원효면 1가 18   | 경우리   |    |  |    |
| 72 | "   |       |    | 11      | "                 | 77    | 진농면 558     | 진세현   |    |  |    |
| 73 | "   |       |    | 13      | "                 | 88    |             | 진일동   |    |  |    |
| 74 | "   |       |    | 19      | "                 | 21    |             | 진학수   |    |  |    |
| 75 | "   |       |    | 20~ 2   | "                 | 108   |             | 진의동   |    |  |    |
| 76 | "   |       |    | 65~ 1   | "                 | 61    | 상평읍 436-5   | 문성면   |    |  |    |
| 77 | "   |       |    | 68~ 25  | "                 | 55    |             | "     |    |  |    |
| 78 | "   |       |    | 68~ 31  | "                 | 43    | 화양동 118     | 백성숙   |    |  |    |
| 79 | "   |       |    | 68~ 32  | "                 | 3     |             | "     |    |  |    |
| 80 | "   |       |    | 70~ 53  | "                 | 118   | 충정동 70-78   | 진이수   |    |  |    |
| 81 | "   |       |    | 70~ 35  | "                 | 25    | 충정동 10      | 진서환   |    |  |    |
| 82 | "   |       |    | 72~ 33  | "                 | 3     | 동양체육주식회사    |       |    |  |    |
| 83 | "   |       |    | 73~517  | "                 | 53    | 홍익동 262-1   | 대중면   |    |  |    |
| 84 | 군자동 |       |    | 126~ 2  | 진                 | 17    | 충정동 72      | 김영선   |    |  |    |
| 85 | "   |       |    | 133~ 8  | 대                 | 26    | 행당동 317-510 | 손수숙   |    |  |    |
| 86 | "   |       |    | 134~ 6  | 당                 | 1,053 | 서운목면서       |       |    |  |    |
| 87 | "   |       |    | 187     | 도                 | 55    | 불광동 231     | 장우성   |    |  |    |
| 88 | "   |       |    | 194~ 4  | 전                 | 12    | 군자동 325     | 손세기   |    |  |    |
| 89 | "   |       |    | 186~ 3  | 당                 | 296   | 군자동 174     | 장진성   |    |  |    |
| 90 | "   |       |    | 193~ 7  | 전                 | 59    | "           | "     |    |  |    |
| 91 | "   |       |    | 190~ 10 | "                 | 2     | 불광동 231     | 장성숙   |    |  |    |
| 92 | "   |       |    | 190~ 11 | "                 | 4     | "           | "     |    |  |    |

## ◎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

성 명 : 이 주 민 소 속 : 폐홍동

직 명 : 지방행정서 기관

본 척 : 전남보성군 응천면 강산리 585번지

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8 ~ 25호

출석이유 : 정체사유에 대한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

출석일시 : 74. 5. 25. 10:00

출석장소 : 마포구 부청장실

기 타 :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일시까지 당위원회  
에 진술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지방공무원 정체 및  
소청규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한 것을  
공고 합니다.

1974. 5. 10.

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

이 주 민 귀하

| 사<br>경  |  |
|---|--|
| ● 1974.4.25.  | 상당)에 입함.<br>1호봉을 굽함.<br>아동 상담소장에 보함.   |
| · 시민과 지방행정<br>서기보서보 이순웅<br>지방행정서기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굽함.<br>시민과 근무를 명함.<br>감사과 부이사관 원웅학<br>대통령비서실파견 근무를 명함.<br>(1974.5.1 - 1974.10.31) | 회계법<br>지방토목기과서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굽함.<br>토목시험소 물리과장에 보함.<br>영신과 지방기계 전성호<br>1947년 5월 1일 지방기계기과에 입함.<br>대통령 2호봉을 굽함.<br>설비제작에 보함.<br>지하철본부 지방전기<br>전차과 기사 배인근<br>지방전기기과에 입함.<br>2호봉을 굽함.<br>김수제장에 보함.<br>도시지방화물 안중근<br>가스사업소 기사 지방화물기과에 입함.<br>2호봉을 굽함.<br>생산과장에 보함.<br>서대문병원 지방간호 조애형<br>회재향지방간호기과에 입함.<br>2호봉을 굽함. |
| ● 1974.5.3.   | 관재과 지방행정<br>서기보 김세홍<br>원에 위하여 그직을 면함.  |
| ● 1974.5.4.   | 서대문구 지방행정<br>시민봉사실 서기<br>관왕과 근무를 명함.<br>승기관리사업소 지방기계<br>(직위폐지증) 기사<br>복직을 명함.<br>지방아동복지지도원 (3급율류   |

39-36 제 445 호

시

보

1974.5.9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간호과장에 보합.                        | 동대문부녀복지관장, 경제을 명함.                     |
| 농정과 지방수산 기관에 입함.<br>지방수산기과에 입함.  | 부녀과 지방행정부서 팀장 김진숙<br>양치회부장 경제을 명함.     |
| 2호봉을 급함.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동부 지방행정부서 팀장 정재복<br>아동복지과장 사무관        |
| 수산물제장에 보합. 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행정과 수납제장에 보합.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하철본부 지방건축과<br>공무과 기관에 입함.       | 정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호봉을 급함.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1974.5.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건축제장에 보합.                        | 판악구 지방행정사 이윤철<br>송기한                   |
| 종로구 지방건축과 김현국<br>지방건축기과에 입함.     | 판악구 지방행정사 이현의<br>조남성                   |
| 2호봉을 급함.                         | 판악구 지방행정사 정용술<br>박재식                   |
| 건축과장에 보합.                        | 종로구 지방행정사 정경일<br>김경원                   |
| 중우병원 간호과장 기관과<br>간호과장에 보합.       | 동대문구 지방행정보정기<br>김운재                    |
| 아동병원 간호과장에 보합.                   | 동대문구 지방행정보정기<br>김경일                    |
| 남부병원 간호과장 김정근<br>중부병원 간호과장에 보합.  | 마포구 지방행정기<br>최정태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실병원 간호과장 장내원<br>영등포병원 간호과장에 보합. | 중로구 지방행정기<br>김영가                       |
| 영등포병원 간호과장 이준애<br>남부병원 간호과장에 보합. | 성북구 지방행정기<br>유실경                       |
| 군우회관장 지방행정부서<br>설동부녀복지관장에 보합.    | 도시가스사업소 균무를 명함.<br>서도시사업소 지방행정기<br>금병국 |
| 성동구부녀복지관장 지방행정부서<br>복지관장에 보합.    | 자동차정비창 균무를 명함.<br>동대문구 지방행정기<br>이석기    |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마포구         | 지방행정<br>서기보  | 김해구                   | 윤수 1과 과장 (74.5.8-74. |
| 마포구         | 지방행정<br>서기보  | 박만식                   | 11.7) 근무를 명함.        |
| 영등포구        | 지방행정<br>서기보  | 전영규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용산구         | 지방행정<br>서기보  | 박병천                   | 1974.5.10            |
| 도시가스사업소     | 근무를 명함.      | 경북 지방토목<br>건설국자수과 기사보 | 이위익                  |
| 도시<br>가스사업소 | 지방행정<br>주사보  | 임태승                   | 서울특별시 건립을 명함.        |
| 양서출장소       | 근무를 명함.      | 지방토목기사보에              | 임함.                  |
| 도시<br>가스사업소 | 지방행정<br>서기   | 장희봉                   | 4호봉을 굽함.             |
| 묘지관리사무소     | 근무를 명함.      | 계량 1과                 | 근무를 명함.              |
| 종로구         | 지방행정<br>서기   | 이성구                   | 최기덕                  |
| 중구수도사업소     | 근무를 명함.      | 지방보건연구원서보에            | 임함.                  |
| 관악구         | 지방행정<br>주사보  | 이재균                   | 1호봉을 굽함.             |
| 관악구수도사업소    | 근무를 명함.      | 위생연구소                 | 근무를 명함.              |
| 중리관리        | 지방행정<br>주사보  | 박우근                   | 율방경                  |
| 양서출장소       | 근무를 명함.      | 지방보건연구원서보에            | 임함.                  |
| 중부관리        | 지방행정<br>서기   | 서상학                   | 1호봉을 굽함.             |
| 영동출장소       | 근무를 명함.      | 위생연구소                 | 근무를 명함.              |
| 성북구         | 지방행정<br>서기   | 유정걸                   | 전형일                  |
| 영동출장소       | 근무를 명함.      | 지방보건연구원서보에            | 임함.                  |
| 성동구보건소      | 지방행정<br>서기보  | 이현규                   | 1호봉을 굽함.             |
| 은평출장소       | 근무를 명함.      | 위생연구소                 | 근무를 명함.              |
| ● 1974.5.8  |              | 신명덕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정개발        | 지방행정<br>담당관실 | 황병철                   | 지방보건연구원서보에 임함.       |
| 주           | 사            | 1호봉을 굽함.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39-38 제445호

시 보

1974.5.9.

|   |  |     |
|---|--|-----|
|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.   | 정 수영 지방기자기 사보지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급함.                     | 최화영 |
| 지방보건연구원보서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급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호봉을 급함.<br>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윤원상 |
|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.<br>지방화공기원보서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급함.               | 이규설 지방화공기 사보지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급함.<br>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.   | 이원갑 |
|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.<br>1호봉을 급함.<br>지방화공기원보서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급함. | 이문재 지방화공기 사보지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급함.<br>영등포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. | 백영천 |
| 1호봉을 급함.<br>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.<br>지방화공기원보서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급함. | 심재필 지방토목기 사보지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급함.<br>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.   | 강기룡 |
| 영등포구 행정주사부<br>감사원 전출을 명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상인 지방토목기 사보지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급함.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지방기자기 사보지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급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용구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체수봉 |
|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.   | 지방토목기 사보지보에 입함.<br>1호봉을 급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| 운명금장소 근무를 명함.  |     |

| 이 창 성          |  | 1호봉을 굽함.      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
| 제방진축기사보서보에 입함. |  | 용산구 근무를 영한.    |
| 1호봉을 굽함.       |  | 정재만            |
| 양서출장소 근무를 영한.  |  | 지방진축기사보서보에 입함. |
| 한 무 길          |  | 1호봉을 굽함.       |
| 제방진축기사보서보에 입함. |  | 영동출장소 근무를 영한.  |

## 서 울 특 별 시 장